

한국기독교장로회 법제업무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규의 체계를 통일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 노회, 지 교회 및 산하기관의 법규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

헌법, 규칙, 규정, 시행세칙과 정관 등을 말한다.

2. 법제

법규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3. 수정

법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의결하여 자구를 고치거나, 인용한 법규의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용어 및 배치)

1. 법규는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며, 기관명과 법규의 명칭은 띄어 쓴다.
2. 장과 부칙은 가운데 배치하고, 조는 왼쪽 첫 자에서, 항은 두 자, 호는 네 자 띄어 시작하고, 문장은 두 자 띄어 작성한다.

제2장 체 제

제5조 (법규의 체제)

1. 법규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장은 법규의 내용을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만 두고, 제○장으로 표기한다.
 - 2) 조는 법규의 내용을 구분할 때 두고, 제○조로 표기한다.
 - 3) 항은 조를 세분할 때 두고, 1.2.3. 등으로 표기한다.
 - 4) 호는 항을 세분할 때 두고,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5) 항이 1개이면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6) 호를 세분할 때 목을 두고,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7) 목을 세분할 때 모를 두고, ① ② ③ 등으로 표기한다.
2. 모든 법규에는 부칙을 둔다
 - 1) 부칙에는 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 2) 부칙이 2개 이상이면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 3) (시행일) “이 법규는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표기한다.
 - 4) (경과조치)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미치는 사항 등을 명시한다.

제3장 현 의

제6조 (법제안 제출)

1. 총회의 각 부서는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할 수 있다.
2. 노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현의할 수 있다.

제7조 (법규의 제정안)

1. 법규의 제정 사유, 명칭, 목적, 적용 범위 등과 하위 법규에 위임할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 (법규의 개정안)

1. 법규의 개정사유, 현행 법규와 개정안을 비교하고,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2.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조, 항, 호는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제9조 (법규의 폐지안)

법규의 폐지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제4장 심 의

제10조 (심의 기준)

법제 현의안은 다음 기준으로 심의한다.

1. 현의안의 필요 여부
2. 법규의 명칭 적정성 여부
3. 법규의 체제, 용어, 부호 등의 적합성 여부
4. 다른 법규에 미칠 영향 유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심의 의결)

법제부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1. 체제 등이 이 규칙에 어긋나면 의결하여 수정한다.
2. 현의안을 보완하면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조, 항 또는 호를 삭제, 추가, 기각할 때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4. 헌법위원회의 연구와 심의가 필요한 현의안은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의 결

제12조 (개정)

1. 총회의 규칙 :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규정과 정관 :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행세칙 :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락한다.
4. 법규의 제정 의결은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13조 (시행세칙)

법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고, 명칭은 위임한 법규의 명칭에 시행세칙이라고 붙여 쓴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법제를 준용한다.

제15조 (기록)

1. 신설하는 조는 관련이 많은 조 다음에 제○조의 2로, 항과 호는 끝에 배치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2. 조, 항, 호의 신설, 개정, 삭제, 폐지가 의결되면 ()안에 총회 회기를 기록한다.
* 예 (제100회 신설)

제16조 (공고)

확정된 총회의 법제사항은 총회 회보에 게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